

통령선거를 맞아 민족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운동을 더욱 폭넓고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운동의 유력한 주체로서 범주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문제를 15대 대통령선거의 쟁점으로 만들고 이를 각 후보들이 공약화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분들이 실천해온 삶을 제조명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저변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독재자에 대한 사면논의를 불식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부분은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운동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고 역사정의에 바탕을 둔 진정한 국민통합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것인지를 국민적으로 알려나가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 그리고 역사적인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과 역사적 재평가의 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하나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운동과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진척시키고, 민족민주운동을 명실공한 정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궁극적으로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운동이라는 점이다.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운동의 궁극적 지향이 민족민주운동을 우리 사회발전의 명실공한 주역으로 성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부단히 변화, 발전시키는 것임을 인식할 때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운동의 당면과제로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쟁점화하고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 민족민주운동을 계승, 혁신하고 정치사회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는 것은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운동의 또다른 측면인 것이다.

민족과 민주를 온 몸으로 사랑하고 실천해 온 민족민주열사들의 실천과 희생적 삶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계승작업이 국민적인 관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이 분들의 지향이 사회적인 현실로 될 수 있도록 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는 것은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운동과 관련하여 우리가 견지해야 할 진정으로 주체적인 관점일 것이다.

300쪽 아미 1장 하(상부권 2권) 1971-1973

207쪽 유류비(1971) 김두관(1971) 김두관(1971) 김두관(1971) 김두관(1971)

<김두관(1971)> 1971년 8월 10일

1971년 8월 10일 김두관(1971) 김두관(1971) 김두관(1971)

1971년 8월 10일 김두관(1971) 김두관(1971) 김두관(1971) 김두관(1971)

1971년 8월 10일 김두관(1971) 김두관(1971) 김두관(1971)

1971년 8월 10일 김두관(1971) 김두관(1971) 김두관(1971)

1971년 8월 10일 김두관(1971) 김두관(1971) 김두관(1971)

1971년 8월 10일 김두관(1971) 김두관(1971) 김두관(1971)

인권 자료실		
층		번호
98 5/2	B12-2	1

<토론자료>

한국에 있어서의 의문사 문제

변호사 차 병 직

1. 의문사의 정의

이 세상의 모든 죽음 가운데 따지고 보면 의심스럽지 않은 죽음이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죽음들은 그런 철학적 의미의 의문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력에 의해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생명권을 무참히 박탈당한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한 의문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 1)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 : 즉, 자살인지 타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는 시간, 경위, 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2) 사인에 관한 진실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죽음 : 사인이 불명확한 이유가 은폐나 조작 때문이라는 의심이 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 3) 사인의 은폐 및 조작의 동기가 정치적 이유나 정부기관의 책임회피에 있는 죽음 : 반민주적정부 또는 군사독재정권이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그에 장애가 되는 인물들을 살해하고 은폐 조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불법연행 및 고문 등으로 우연히 사람이 사망한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숨기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사인과 관련한 진실의 은폐 및 조작의 방법으로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 수 있다.

- 1) 성급한 강제부검
- 2) 유족 부재증 부검
- 3) 화장 강요 *박정희 89. / 박정희 89년*
- 4) 일방적 가매장 후 유족에게 연락 *86. 영남대*
- 5) 증거품 은닉 *85. 유가족, 박정희*
- 6) 시신의 변형조작

*박정희 89년 - 1989년 12월 25일
인간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국가적 위기에 인권을 희생되려 한다면 인간적 인권을
희생한다"*

2. 의문사의 유형

의문사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그 유형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장소에 따른 분류
 - 가. 일반의문사
 - 나. 군부내에서의 의문사(이는 강제징집에 따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2) 동기에 따른 분류
 - 가. 정치적 동기
 - 나. 관계기관의 책임회피

1. 유가족협의회에서는 의문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의문사란 죽음 자체가 시간과 경위, 동기들이 불명확하며 정확한 사인들이 은폐된 채 교묘하게 자살 등으로 위장되어 있는 의문의 죽음을 말한다."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산하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 내 자식 죽인들 제명에 못살리라, 75면.)

3) 피해자에 따른 분류

- 가. 학생운동
- 나. 노동운동
- 다. 기타

4) 피해의 규모에 따른 분류

- 가. 개별적 의문사

나. 집단의의문사(5.18 광주사태, 삼청교육대 등)

5) 조작방법에 따른 분류

- 가. 타살을 자살 또는 사고사로 위장
- 나. 타살이나 그 배후 또는 정치적 동기만을 은폐

3. 의문사의 법적 의미

의문사는 결국 불법적인 생명권의 침해를 말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가장 근원이 되는 생명권을 직접 유린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생명권'이란 생명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생명'이란 뒤리히(Dürig)의 표현대로 「아직 도 생존하지 않는 것」과 「사(死)」에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을 말한다.²⁾

생명권에 관하여는 세계인권선언의 제3조에서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6조 제1항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천부적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여 세계인권선언의 규정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의미는 생명권이란 사회나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천부적 생래적 권리이며, 따라서 사회와 국가는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³⁾

우리나라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⁴⁾ 그러나 헌법 해석상 생명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생명권의 해석상 근거를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 제37조의 포괄조항에서 찾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각종 형사관계법들도 생명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⁵⁾

실정법상으로 뿐만 아니라 법철학적으로 생명권의 실질적 상징적 의미는 뚜렷하다. 자율적인 도덕적 자유의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근거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국가가 바로 법치국가인 것이다. 법치국가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법치국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두 단계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데, 국가는 법에 구속되고 법은 인간에 구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법과 법치국가의 개념이 도출된다는 것이다.⁶⁾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이 되는

2. 김철수, 신고 헌법학원론, 박영사, 1989, 315면.

3. 국제사면위한국연락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물레, 1988, 203면.

4. 서독기본법은 생명권 규정과 아울러 사형을 명문으로 폐지하고 있다.

5. 예컨대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등은 생명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다.

생명권은 법이나 국가가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할 절대가치가 되는 것이다.

생명권의 법적 의미 및 가치가 이러할 때, 한 국가에서 의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험적 사실이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의문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진정한 법치국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4. 의문사의 현황

한국에서는 1980년 이래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 의문사의 피해자들은 주로 반정부 활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이거나 근로자들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기관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증거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수사당국은 대부분의 사건이 자살이라고 주장해 왔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다.⁷⁾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협의회가 1992년 5월 공동으로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 중 생명권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의문사의 상황을 간결하게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의문사의 문제가 현재까지 미해결의 당면 과제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억을 되살려 볼 때, 멀리로는 김구 암살사건에서부터 장준하, 최종길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이고, 박정희정권 초기 국도건설단, 7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들도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으로서는 피해 상황의 정리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후 정권교체의 과도기에 발생한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사건에서는 집단 의문사의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기억에 너무나 뚜렷이 남아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뒤를 이어 5공화국과 6공화국 초기에 이르러서도 군부대, 학원가, 노동현장, 일반 사회에서 의문사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에 처음으로 대처를 한 것이 의문사유가족협의회의 구성이었다. 1988년 10월 17일 의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로 구성된 의문사유가족협의회가 발족되었고, 이는 10월 25일 유가협 산하 의문사진상대책위원회로 개편되어 80년 이후 발생한 의문사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피해 신고의 접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당시 신고 접수된 피해자 명단은 35명이었으며, 현재까지는 그 이상의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의문사유가협 구성과 함께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인권위원회의 사무실에서는 그 다음 해까지 장기간 피해자 어머니들의 농성이 있었고, 거기서 5공화국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회 내에서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같은 기간 중인 1988년 11월 5일 평화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하여 5공비리조사특위의 인권소위에서 의문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정부가 출선하여 의문사 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를 하여 5공청산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의문사 문제는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분노의 응어리로 남아 있는 것이다.

6. 법치국가와 인간의존엄, 베르너 마이호퍼, 심재우 역, 삼영사, 1994, 5면.

7. 한국인권의 실상, 역사비평사, 1992, 129면.

5. 의문사에 대한 과제

의지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며, 이성 자체는 다만 그 의지의 영원한 규율이다. 따라서 인간은 폭력을 감수할만큼 존엄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는 바로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비겁하게도 그 폭력을 감수하는 자는 그의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이다.⁹⁾

의문사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전형적 사례이며 그 행위의 주체는 비인도적 범죄자에 해당된다.⁹⁾ 따라서 의문사의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의 전제 또는 선결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서 과거청산의 과제 중 구체적 일부가 된다. 이러한 의문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과제는, 첫째 진상의 규명이고, 둘째 규명된 진상에 따른 법적처리이고, 셋째 앞으로의 재발 방지의 조치와 노력이다.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과거청산의 그것과 일치한다. 과거청산을 구정권과 그 시대하에 벌어진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리화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정리¹⁰⁾라고 한다면, 그 첫번째 과제가 진실의 규명과 공개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가능한 조속한 수사를 명령하는 헌정권의 의지가 요구된다. 바꾸어 생각하면, 어떠한 목적(정권의 이익 등)을 위하여 해결하여야겠다는 정권 및 수사기관의 과잉의지가 발동될 경우 고문과 조작, 환상적 추리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무고한 자를 범인으로 확정하는 사례를 보아왔는데, 그러한 의지를 이 문제에서도 보여주어야 한다. 진실을 은폐된 채로 묻어두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심화시켜 그들의 인권을 다시 짓밟는 행위가 되고 만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결과 드러난 불법에 대하여서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공소시효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대한 별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의문사로 묻힐 뻔 했던 사건이 모든 국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하여 진상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유족에의 배상이 해결된 경우를 박종철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향후 이러한 의문의 죽음이 계속 발생하는 비극을 예방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단 하나의 의문의 죽음이 존재하여도 그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는 법치국가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의문사를 포함한 과거청산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는 앞으로의 보다 나은 물질적 삶을 위해 과거의 정신적 문제를 홀대하여서는 안된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유토피아적 의도와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자연법적 의도는 따로 떨어져 추구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8. 쉐러, '고귀한 것에 관하여' 중에서

9. 미주인권재판소에서는, 실종사건들은 인도에 대한 죄이며 해당 정부는 그러한범죄를 수사, 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10. 박원순,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간 자료집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정부 1년', 69면.

80년대의 한국 사회와 학생 운동,
그 속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한 대학생 박종철

박종철 평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70년대
의 노동자들의 상황과 그 속에서 사람답게 살고
자 했던 한 노동자를 보여 주었듯이, 이 책이
80년대의 한국 사회, 학생 운동과 그 속에서 자
신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한 대학생을 보여
주는 책이 되었으면 한다.”

- 지은이 김태호·최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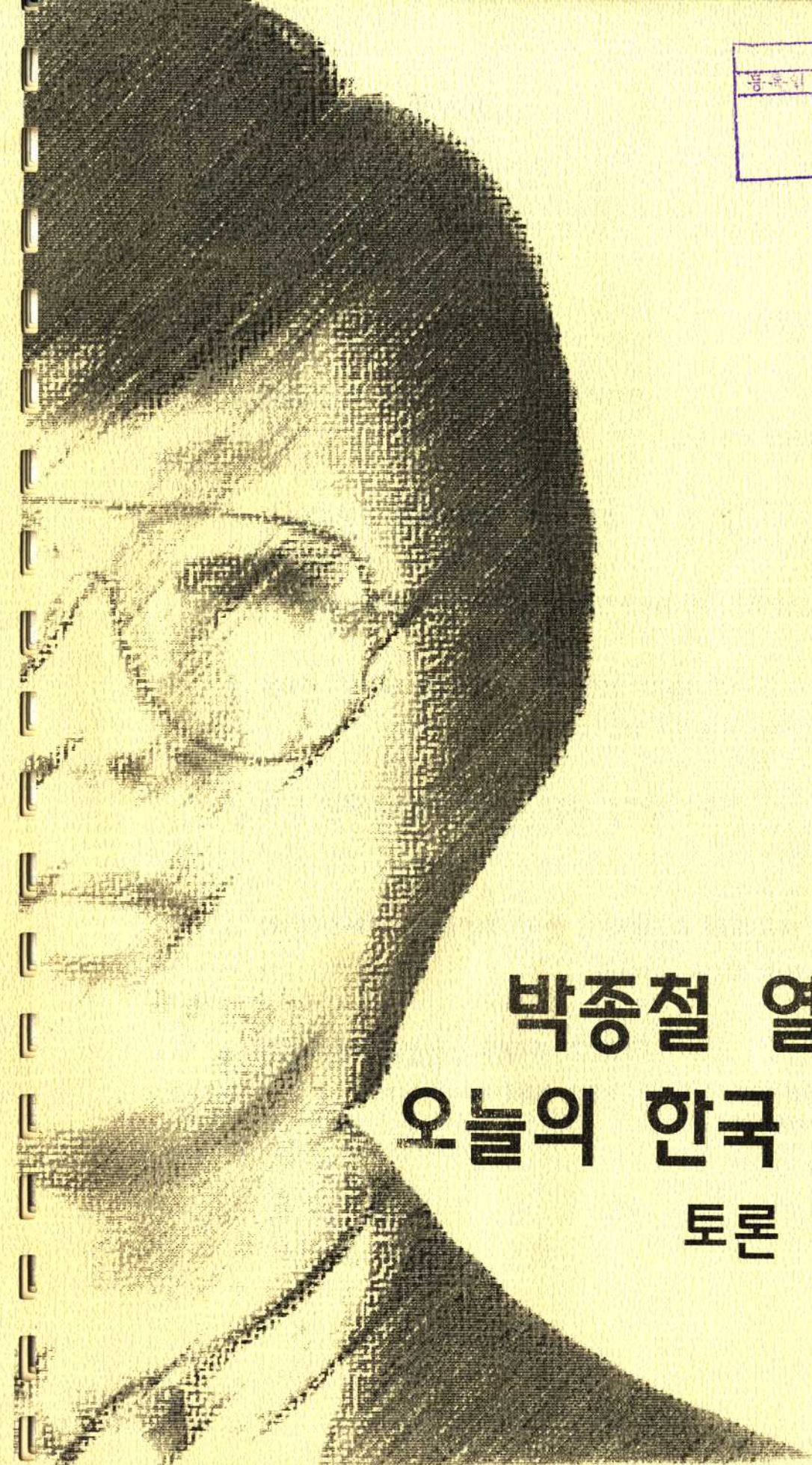
“세월이 가면 동년배들도 나이를 먹고, 힘든
세상살이에 지칠 수 있을 것이다. 뒤를 이어 자
라나는 세대는 또 다른 문제에 당면해 허우적거
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박종철 평전』은
항상 우리를 일깨워 줄 것이다.”

-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태호·최인호 지음
값 8000원

박종철출판사

인권 자료실		
등록일	등록기관	
	B12-5	38



박종철 열사와
오늘의 한국 사회
토론 자료집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호수
	B12-5	72

차례

1. 박종철열사와 오늘의 한국사회

-박종철출판사

2. 박종철열사 12주기 추모 사업을 준비하며

-제17대 인문대학생회(준)

3.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 법 제정에 대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김학철

4. 박종철 열사의 삶, 그리고 열사 정신 계승의 현재적 의미

-제 17대 인문대 학생회장 이지열

5.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오늘의 김대중 정권

-청년진보당

6. (보론1)반세기 인권유린의 역사,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서울대 공과대학 4학년 최영준

7. (보론2)이제 청년실업 운동으로 연대한다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와 청년실업 대책수립을 위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

박종철 열사와

오늘의 한국 사회

..... 토론회에 부쳐

이런 이야기를 실마리로 삼는 것은 어떨까요? 운동이니, 열사니 혹은 혁명이니 하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고, 혹은 너무 진부하다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마저 바칠 수 있었던 시대, 거대하고 명료한 이념 혹은 과제가 존재하던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든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박종철 열사의 죽음도 이제는 '역사'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마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 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혹은 복잡하다고 말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몇 가지 그를 둘러싼 관점과 해석을 봅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가 '신익의 인간'이란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현실 속에서 투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권력의 폭압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던 6월 항쟁의 불길 지핀 인물로서의 박종철입니다. 끝으로 그가 당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했던 급진적인 학생 운동가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싶어하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정신 속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말하려면 혹은 말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기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적 사회주의의 몰락을 알리바이로 하고 세기말을 정신적 압력으로 하는 전망의 진공 상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속에서 숨이 막혀 오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의 진공 상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진정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박종철 열사가 분노했고,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그것, 억압과 착취라는 말로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여전히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해지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이제는 역사가 되어버린 듯한 그에게 기대려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명료한 논리가 없을 때, 바로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는 정신은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80년대 한복판에서 그 시대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관점과 태도를 취했고 그에 따라 살고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과제도 달라졌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근본주의일 것입니다. 표면을 보고 진리를 발견했다고 우쭐대거나 몇 가지 겉모습을 바꾸고 스스로를 대견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해 뿌리까지 파헤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려는 태도, 이것이 그가 말했고 우리가 간직하려는 근본주의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그에게 제자리를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불러낼 필요가 없이.

1999. 1. 14

박종철 출판사

<박종철 열사 12주기 추모 사업을 준비하며>

박종철 열사가 87년 사회 변혁과 민주화의 불꽃으로 산화해 가신 지 12년이 됩니다. 박종철 열사 12주기 추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지금에 있어 유독 박종철 열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추모하는 것은 비단 열사의 삶이 치열한 투쟁 속에서 죽음이 라는 절대적 희생으로 끝났기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이 87년 대투쟁을 불러오는 영웅적인 죽음이기 때문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열사를 돌이킴에 있어 열사의 영웅적인 삶에 대한 경의나 죽음이 가져오는 막연한 숙연함만 느낀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열사를 살려낼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과거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오직 그것에 의해 현재의 의미가 확정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열사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넘어서서 현재에 있어서의 교훈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사의 혼을 무연히 되살려서 다시 한 번 외로운 죽음 속으로 떠밀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박열사의 치열했던 대학생활은 그의 영웅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차라리 친근한 한 선배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군사파쇼라는 사회 모순의 거대한 뿌리에 맞서 불꽃처럼 투쟁하는 대학이 던져준 감격, 이것을 맨몸으로 다 던져 받아 안았던 선배의 솔직한 대학생활은 대학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가까운 선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친한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태일 평전을 읽고 새로 배우고 싶다고 덤비는 후배의 열정에 찬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열사의 삶은 막연한 역사가 아닌 구체적인 시대상황 속에서 그가 서서 투쟁했던 우리 운동의 한 지점을 나타내며 그 교훈이 지금의 싸우는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리켜 주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군사파쇼타도와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제단에 올려진 열사의 삶이기에, 남한 역사의 한 국면을 돌파하는 싸움 속에서 죽어간 열사의 삶이기에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도 여전히 열사를 통해서 사회변혁을 향한 총체적 투쟁을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지금에 있어 박종철 열사는 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한발 물러서려는 지금의 학생회와 학생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올바른 변혁적 좌표를 설정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박종철 열사를 통해 80년대 '혁명적 민주주의 운동'의 한계를 짚어낼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변혁적 관점으로 학생운동을 세워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묻는 열사에게 어제를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철

발제 1

진상 규명법 제정의 대학역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무의 주무

기획국장 김학철
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

1. 법 제정이 갖는 의의

1) 우리 민중의 역사는 외세와 독재, 자본의 폭압에 맞선 투쟁의 역사였다. 총칼과 모든 폭력 수단을 거머쥔 이들과의 투쟁에서 우리 민중들은 맨 몸으로, 오로지 나라와 겨레의 밝은 내일을 위해 싸워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의 동료들이 감옥에 끌려가야 했으며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의 폭압기관들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해야만 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의 온갖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과 조직,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야만 했으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하다 마침내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분신, 투신, 할복 등의 방식으로 바쳐야 했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라 한다. 수많은 열사들이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그 제단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하지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려고 결단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번민이 있었겠는가. 진실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민중과 함께 투쟁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음에도 민중들에 대한 억압이 가시지 않자, 나라와 겨레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 것이다. 뼈와 살이 타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열사들이 염원했던 것은 나라와 겨레가 모든 압제와 폭압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특히 타인에 의해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더욱

박종철열사와 오늘의 한국사회

이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면 살 수 있는 길이 보였을 때 그 공포와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자신의 사상과 조직 그리고 동료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같이 가해자가 은폐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보다 몇 배의 고통이 있었으리라.

2) 이러한 희생들을 통해 우리 역사는 점차 어둔 장막을 걷어내고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은 운명하신 뒤 아직까지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등의 악법으로 씌어놓은 범법자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으며, 폭압기관에 의해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되어 버린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독재 정권과 자본에 의해 살해당하고 은폐된 의문의 죽음을 진상 규명하는 것과, 열사들의 명예회복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억압과 착취의 세상을 해방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을 밝혀 내고, 사상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 각종 악법 폐지와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 폭압기구들을 민주적인 기관으로 재편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민주 인사들이 탄압되고 희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처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은 열사들이 죽음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것,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3)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이처럼 열사 개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뿐 아니라 열사와 연관되었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명예회복이며, 반대로 외세와 독재, 자본의 폭압성을 폭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운동은 제도적으로 그 정당성을 획득하여 한층 확장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땅의 민중들이 '한 시대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바람직한 인간의 전형'인 열사 희생자들을 따르고 기리도록 하여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염원하였던 세상을 살아남은 자들이 실현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

2. 명예회복,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진행 과정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는 1998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이루기 위해 1년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모든 사업이 여기에 모아지도록 하였다.

- ① 준비기(1997년 12월~1998년 4월) : 사업 계획을 세우고 내외 조직 강화와 제반 준비.
- ② 1단계 투쟁(1998년 4월 24일~5월 31일) : 서울역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악법 철폐, 폭압기구 해체를 위한 대국민캠페인'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를 전개하면서 서명과 엽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함.
- ③ 2단계 투쟁(1998년 6월~11월 3일) : 대국민캠페인을 전국화, 조직화하기로 하고 매주 금요일을 '열사·희생자의날'로 정하고 서울역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지로 확산.(10만여명 서명 받음)

악법 철폐와 폭압기구 재편투쟁을 위해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 항의방문 투쟁 전개.

33개의 주요 단체와 국회의원 65인이 가입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약칭 열사범추위)를 결성하여 대국민캠페인에 박차를 가하였음.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진상규명을 위한 '98년 제2차 학술회의를 9월 1일 개최하여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의문사 진상규명예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민변에서 발표 함.

- ④ 3단계투쟁(1998년 11월 4일~1999년)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명예회복,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 진행 중.

농성 중반기까지 여야 3당을 돌며 하루 3번 촉구집회 개최.
현재는 국회 앞에서 피켓팅.

3. 현재 법 제정 진행 상황

1)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회의 소속 의원 105인이 소개의원으로서 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의 명칭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음.

주요 골자

1969년 8월 7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사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어 현저히 장애가 있는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하며, 특별 재심을 통하여 조작 사건 등에 대한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음. 9인의 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함. 명예회복의 대상자는 4·19혁명 사상자나 4·19혁명 상이자에 준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게 됨.

2)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까지 국민회의 당 안은 향후 설치될 예정인 국가인권기구 내에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두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나 우리는 애초에 요구하였던 대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주요 골자

1969년 8월 7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사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사한 자로 유가족이 집계한 자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9명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여 수사함.



발제 2

현재적 의미, 그리고 열사정신체승의

학생회장 이지열 제17대 인문대 학생회

오늘을 묻는 열사에게 어제를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1. 박종철 열사 12주기를 추모하며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를 때 신문지상에서 한 대학생의 죽음을 언뜻 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는 박종철이라는 사람이었다.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하게 자행되던 시절, 박종철 열사는 동지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 그리고 그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다시 부활했다. 대학을 입학한 이후엔 매년 열사의 기일이 되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부끄러움을 안고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박종철 열사의 12주기 추모식이 다가왔다.

작년 겨울부터 유가협 아버지 어머니들은 국회 앞에서 "열사 명예 회복과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신다.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다바친 자식들을 생각하며 힘든 몸을 이끌고 투쟁을 전개하시는 분들이다. 열사님들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투쟁을 하시고 계신데 과연 열사 정신의 계승을 위해 청년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열사 정신의 계승은 열사의 삶을 되돌아보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 현재적 의미의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노동자 민중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실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열사정신은 다시금 우리를 투쟁의 대열로 나서도록 이끌고 있다. 요즘은 우리 대학인들 중에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우들이 도서관으로 고시촌으로 경쟁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내가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공동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대학인의 삶이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박종철 열사와 오늘의 한국사회

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단체 행동이 요구된다. 열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극복하고 미래 코뮌 사회를 선취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고민하게 된다. 동지를 위해 죽음을 맞이한 박종철 열사의 삶은 무너져 가는 대학 사회에서 연대의 정신과 동지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한편 열사의 정신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시대를 선도하는 혁명 정신을 가르쳐 준다. 언제부터인가 학생 운동은 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전체 운동에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서슬퍼런 독재 정권이 탄압을 가할 때에도 꾀꾀히 이겨내었던 학생 운동이 합법적 운동 영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지금 오히려 선도성은 사라지고 있다. 학생 운동 일부의 "노동자주의"는 학생운동을 노동운동의 하위 부문으로 전락시키고 독자적이고 고유한 학생운동의 임무를 퇴색시키고 있다. 학생운동에는 분명 시대에 맞는 선도성과 혁명성이 요구되며 이는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현재적 투쟁의 과제인 것이다.

2. 김대중 1년의 평가

IMF구제 금융 체제와 함께 정권의 출범을 하게 된 김대중 대통령은 파쇼 독재 체제로부터 보수주의적 자유주의 체제를 정착시켰다. 보통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룩한 만큼 적어도 절차상의 민주주의에서는 덜 파쇼적인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을 노사정 테이블에 끌어들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모습은 과거 정권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운동진영에 대해서도 일부는 체제 내로 포용하고 한총련, 범민련 등과 같은 일부의 세력에게는 여전히 탄압을 가하는 방식으로 보다 교묘한 분리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사회적 합의의 이데올로기로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자신의 부르주아적 지배의 본질을 은폐하려 했다. 정리해고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대며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수용하게 하고 경제위기의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가져왔다. 그 결과 정규직의 하청화, 하청용역 노동자의 임시직, 일용직화가 광범위하게 진척되고 불완전 취업자의 수가 정규 취업자를 앞지르게 되었으며 실제 실업률은 10%대를 육

박하게 되었다.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정부 공식 통계에 무급가족 종사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 수는 500만 명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5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97년과 98년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 소득을 비교하면 상위 20%는 2.3%가 증가했지만 하위 80%의 소득은 5.5~14.9%가 감소하였는데 하위층으로 갈수록 비율은 더욱 감소했다. 그야말로 20대 80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엄단하고 “조금만 참으라”, “고통 분담”이라는 말들로 계급 투쟁을 무마시키려 했다.

김대중 정권의 보수성은 과거 청산에 미흡하고 양심수 석방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과거 정권이 양산해낸 양심수에 대해서 정권은 사회적 합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선별적인 석방에 눈감아버리고 이후 8.15특별사면에서 준법서약서를 통해 백태웅, 박노해, 김성만 등 대표적 양심수들을 석방했다. 준법서약서가 침묵의 자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양심수를 풀어준 만큼 다시 그 이상의 양심수를 양산해 내었다는 점에서 새 정권의 양심수 석방은 기만적이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률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았다는 점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김대중 정권 이후 더욱 심해졌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김대중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매우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했지만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표방한 “인권 대통령”은 허구적 인권을 표상하는 것이었고 부르주아적 지배 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얼마 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되었고 이는 이후 공안 정국의 향방을 시사하고 있다. 운동 세력에 대해 일부 포용하면서 나머지 세력에게는 여전히 칼날을 들이댈 것이다. 한총련 의장을 결의하자마자 고대총학생회장이 구속된 것은 학생 운동에 대한 탄압이 여전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이후 남북 관계에 변화를 줄 것이고 남북 교류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미 금강산 관광이 상품화되었듯이 북한 시장을 파고들려는 남한 자본의 이해 관계 속에서 남북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냉전 이데올로기의 축소와 함께 국가보안법이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되는 등 햇볕 정책은 일부 긍정적 영향을 수

반하겠지만 이윤 증식을 통해 자본은 확대재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김대중 대통령의 1년을 평가해 볼 때,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고용 안정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적 합의와 인권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들의 투쟁을 무마시키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합리화, 정당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3. 99년 학생운동의 임무

자본의 과잉 생산과 금융자본의 위기로 공황을 맞이하게 된 세계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복지 국가를 파괴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기에 내몰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실업자는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고 1분에 24명이 굶주림으로 죽어 간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은 생산력의 파괴를 통해 공황을 극복했다. 이 구조조정 과정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고 남한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 역시 그러했다. 재벌개혁이 수천 억대의 재산을 가진 재벌 총수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정리해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의 구조조정이다. 그렇다면 서슬퍼런 자본주의의 칼날에 맞서 청년 학생의 투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99년 학생운동의 투쟁 방향은 청년실업과 교육에 맞추어진다. 학생운동은 청년실업과 교육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자본주의의 폭력에 대항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변혁을 선도해야 한다. 실업 문제는 졸업을 앞 둔 대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 중 16만 명이 예비 실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업의 공채 예정은 천명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리해고가 단행되는 마당에 기업의 신규 채용은 꿈도 꾸지 못한다. 취업난으로 대학에 고시 열풍이 불고 휴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시장논리에 따라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훈련소가 되고 있는 것 역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공공성을 잃어가고 대학 공동체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탈각되어 간다. 따라서 자유로운 학문을 추구할 수 있는 대학, 기득권이 아닌 사회적 보편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대학, 소수의 인권이 보장되고 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대학을 위해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

대학은 한 대학의 투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학인의 공동 투쟁을 통해 쟁취된다. 한 대학의 투쟁은 이기적일 수도 있고 무너지기 쉽지만 전체 대학인의 연대 투쟁은 사회적 보편 권리를 내걸고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다.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사회 구성원도 단체 행동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본가들과 소부르주아 상인들도 단체 행동권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체 대학인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연합체가 필요하며 이것은 한총련의 사상,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99년 학생운동은 어려운 시대를 맞아 투쟁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학생운동이 고립되어 가고 무너져 가는 시기에 학생운동은 연대와 자립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립없는 연대는 있을 수 없듯이 학생운동의 자립을 통해 몸대주기식의 자세가 아니라 동등한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분화된 사상과 실천을 통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합체의 질서가 용인되는 자립과, 투쟁을 통한 실천적 연대의 기풍이 만들어져야 한다.

4. 산자여 따르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죽은 자를 따르는 산자의 치열함이다. 아우슈비츠의 대량학살 이후 브레히트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노래했고 80년 광주 이후 우리는 '산자여 따르라'를 외쳤다. 광주는 사람들의 머릿에서 점점 잊혀져가지만 열사의 삶과 죽음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따르라고 외치고 있다.

90년대 후반, 곧 21세기를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 열사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당당히 이야기하자. 그 때 열사는 우리의 삶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발제 3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성공과 오늘의 김대중 정권

청년진보당
정재규

1. 들어가기 - 무엇이 추모인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동지가 적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암울했던 아니 끔찍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80년대의 후반의 한겨울에 우리는 선배요, 동지요, 벗인 박종철 열사의 목숨을 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해 여름 수천 수만의 청년들로 되살아나 수백만의 저항하는 민중들로 되살아나,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후로 "6월 항쟁"은 숭한 민중운동의 파고와 진퇴를 거쳐 96-97년 총과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정권교체와 최근의 진보정당 창당마저도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추모제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가 열사를 추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추모를 단지 그와 그 시대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의 투쟁과 사상을 기리고 그것을 현재의 정세가 요구하는 "투쟁"과 전망을 포착하는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추모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 열사와의 약속일 것입니다.

2.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성과

1) 80년대와 90년대의 개괄

70년대가 "전태일 열사"의 외침으로 시작되었다면,

오늘을 묻는 열사에게 어제를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80년대는 “오월광주”로 그 투쟁과 저항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그 오랜 민주화 운동의 높이와 깊이는 전세계를 놀라게 한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80년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투쟁의 진원지인 “오월 광주”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투쟁구호는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였으며, 마치 70년대가 전태일 열사의 투쟁과 그 결실인 노동조합“건설”들로 기억되듯이, 80년대는 “오월 광주”의 영령들의 뒤를 이어 숭한 열사들의 희생과 그 결실인 “6월 항쟁”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민중은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복권되었습니다. 그 일련의 투쟁과 성과는 90년대의 막바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요한 정신적 자산으로 자리잡았으며 소중한 투쟁의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87년의 “노동자대투쟁”은 90년 “전노협”이라는 전투적인 연대노조의 결성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민주노총”으로 거듭 변화, 발전하게 됩니다. 90년대는 비타협적인 노동운동가들로 이루어진 “전노협” 결성과 “3당 합당”이라는 노골적인 반동적 조치로 침예한 전선이 형성됩니다.

결국 87년 “6월항쟁”은 80년대 “민주화 운동” 또는 “민중운동”의 최고의 정점이었으나, 이후 90년대 내내 다시는 그러한 거대 다수의 자발적인 투쟁을 끌어낼 수 없었다는 반성을 갖게 합니다.

2) 6월항쟁의 역사적 의미

남한 민중운동의 역사에서 87년 “6월 항쟁”은 80년 “오월 광주”와 “96-97년의 총파업”을 이어주는 가교이고 시민운동을 포함한 모든 운동 세력들과 그 단체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뿌리내리게 되는 폭발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의 창간과 “전교조”의 결성노력들을 낳게 합니다.

학생운동 역시 6월의 거리를 가득 메운 민중들과 노동자들의 눈부신

박종철열사와 오늘의 한국사회

약진으로 새로운 대중관, 조직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90년대의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공안탄압에 맞서 91년 5월의 격렬한 투쟁을 끝으로 점차 그 힘을 잃어갑니다.

한편 적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월 광주”를 진압한 전두환 5공 정부는 “민주화운동의 세 조류”¹⁾에 의해 꾸준히 성장해온 저항을 무리하게 억압하려다가 “부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열사 살해사건” 등의 범죄들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전민중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6월 항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마침내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87년 대통령선거를 지나 90년 “반호남 지역주의”²⁾의 연대인 “3당합당”으로 지배력을 유지한 그들은 김영

1) “새로운 군사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반체제운동에 강제적으로 부과된 약 3년간의 공백(1980~83) 뒤에, 새로이 등장한 정치적 좌파는 특히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에 의해 대단히 강력해졌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벗어나서 특히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지대로 운동을 확산시켰고, 노동계급운동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급진주의의 이념과 요소를 제공했다. 이제 민주화운동으로 세 개의 조류가 수렴하게 되었다. 첫 번째 것은 민중민주주의의 그룹과 민족해방 그룹이라는 두 개의 주요 분파가 주도하는 급진적인 좌파지향적 운동이며, 두 번째 것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교수들, 교사들, 여성운동가들, 교회활동가들, 문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운동단체들의 출현이고, 반면에 세 번째 것은 이전에는 정치활동 규제대상자였지만 이제는 자유화로 인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직업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야당들이었다.”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310쪽.

: 여기서 최장집은 80년에서 87년 사이의 주요 운동세력을 이렇게 세가지로 분석한다.

2) “... 과거에는 그 격렬함과 광포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대립의 정치는 권위주의적인 여당과 민주적인 야당간의 주된 대립과 병행하면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주된 정치적 대립선은 민주적 개방과 더불어 희석화되었고, 증폭되는 지역주의의 위협은 정치를 반호남과 호남의 대립으로 변질시켰다. 그 가장 두드러진 예가 1990년 1월에, 여당이 경상도에 기반을 둔 제2야당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을 포섭함으로써 만들어진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출현이었다.” - 최장집, 같은 책 324쪽.

삼 정권과 김대중-김종필 정권으로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3) 진보정당의 역할

이러한 87년 “6월항쟁”을 전후한 역사를 살피면서 그 개괄 속에서 우리는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직선제쟁취”라는 슬로건으로 이루어졌다면 80년대의 후반은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보다 발전한 정치의식이 늘어가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자신의 힘과 계급의식을 확인하게 된 노동자들이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전노협”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꾀안는 “민주노총”까지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투쟁이 깊어질수록 그 모든 투쟁을 일상적으로 관여하고 장기적으로 기획할 조직! 바로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진정한 노학연대”와 “민중운동의 총체적 성장”을 아우르고 추진하고 선도하는 주체! 투쟁하는 진보정당!을 시대가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절실한 요구는 90년대 후반까지도 “정권교체”라는 미명아래 타협하는 이들과 운동진영에 퍼진 체제 내적 세력들의 존속으로 “진보정당”은 뿌리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 과제는 “민중당” 이후 최초의 진보정당으로 창당한 “청년진보당”이 시대의 요청에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진보당”을 포함한 모든 진보정당 운동세력들의 전진과 후퇴가 앞으로의 운동에서 중심적인 화두가 될 것입니다.

3. 김대중 정권 1년, 어떻게 볼 것인가?

수평적 정권교체 1년이자 IMF 관리체제 1년 그 동안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에게 느닷없이 들이닥친 실업과 생존의 어두운 그림자를 견어내기 위해 몸부림 쳐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대신에 위정자들에게 부여했던 민주주의의 확대와 경제위기 책임자에 분명한 처벌과 재벌개혁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DJ가 한국의 정치사에서 자리하는 특수 지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견고 이제 냉엄한 비판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는 1년이면 충분하다.

한국 정치사에서 DJ가 차지하는 특수역사적 지위는 ‘반체제 인사’로 요약될 수 있다.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그는 국제사회에 알려진 대표적 반체제 인사였으며, 한국의 군부파시즘 또한 그에 걸맞는 투옥과 고문 납치와 살인위협 등의 탄압을 일삼아 왔다. 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다시 제도권 정치가로 복귀한 이후 당연하게도 집권을 위한 야망을 다시 불태우게 된다. 집권을 위한 10년간의 변화를 보자면 보수정치권 내에서는 87년 ‘급진개혁파’에서 92년 ‘중도 보수파’로의 변신이 이어졌고 집권 이후 지금에서는 권력재창출을 위해 극우보수세력과 결합한 ‘보수정권’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DJ의 국가보안법과 금융실명제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 DJ의 국가보안법과 금융실명제에 대한 입장 변화>

국가보안법	92년 국가보안법 폐지	95년 민주질서 수호법으로 대체입법	98년 인권유린 없게 법적용
금융실명제	92년 금융실명제 완전철폐	97년 차명거래의 축소를 통한 금융실명제 강화	· 대선이후 · IMF기간동안 차명거래 허용 및 금융실명제 한시적 유보 · 무기명 장기채 도입

◆ 출처 : 김대중 정권 100일 평가, 청년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 1998
이제 김대중 정권의 1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세기말 한국정치 ‘개혁’은 가능한가?

prologue

97년 말 호남과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오던 ‘호남파’

일당이 '충청과' 세력과 손잡고 30년 이상 대규모 사행업소로부터 거액의 상납을 받아오면서 보수적으로 나와바리³⁾를 관리해오던 영남파를 급습하여 제압한 사건이 있었다.

호남파의 기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비결은 호남파의 수적 우위보다는 영남파 내부의 '소장집단'의 분열과 '준비된 보스'의 노련함에 기인한 바 크다. 호남파는 권력장악 후 영남파의 재탈환에 대비해 조직원 확대를 시도한다. 일명 '조직원 빼내기'라는 작전을 감행하여 영남파 조직원에 대한 공갈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이에 반발하는 자에게는 '특수기동대'를 투입하여 '밤의 세계'에서 영구 제명하는 등 가공할만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영남파의 보스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으며 중간보스들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집단적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파는 급속히 무너져 가고 있는 영남파에게 수 십 년간 악명을 떨쳤던 '특수 정보부'를 이용하여 마지막 공작을 시도하려 한다. 앞으로 '밤의 세계' 판도는 영남파 중간보스들이 호남파와 연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남파와 호남파의 접이지대인 ××나와바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런 압박한 폭력사태에 대해 "싸우는 것은 좋으나 더 이상 주민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불멘소리를 했다. 새로운 천년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대 세력간의 일대격전이 주목되는 순간이다.

98년을 놀라게 한 문화적 사건중의 하나는 '판지일보'의 폭발적인 인기 일 것이다. 위의 서문은 판지일보의 형식을 원용하여 현실 한국정치를 풍자해 본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정치적 허위의식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정치는 밤의 세계와 완전히 일치한다. 군사통치에서 민간정권으로의 변화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동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적 관행과 사고방식, 사상적 개방성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3) 지역, 구역

정치학자들이 개혁과 민주주의를 연결시키고 김대중 정권을 '개혁정권' '민주주의 정권'으로 평가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일 뿐 민주적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에서는 강패조직과 다를 것이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유효하게 하는 내용의 문제이며 행동하지 않고 활용되지 않는 절차와 내용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독재이거나 전체적 통치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이 나라를 탈나게 만든 수구 보수정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또한 집권을 위해 더욱 악랄한 수구보수파인 김종필과 연합한 정치권력일 뿐이다. 여소야대라는 상황은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져있는 한국정치구조에서는 지극히 올바른 정치현상이다. 이러한 여소야대가 통치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안기부와 검찰을 동원하여 상대 정당 의원(대개는 수구 보수성향의 부패한 정치가들이다)의 약점을 잡아 의원 빼내기를 일삼는 정치, 하루빨리 폐지되어야할 안기부와 반성 없는 정치검찰을 자칭 개혁의 전위대로 세우는 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 걸어온 전철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정권. 지난 20년간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지 정치 행태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한국 보수정치의 현주소이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공통점은 의회를 무시하는 정치이다. 여당 의원의 숫자가 적다고 하여 국회개원을 연기하고, 상대방의 설득을 연기 힘들다고 날치기를 일삼는 정치행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치개혁은 없다.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중지하고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함으로써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을 관철시키는 통법부(通法府)가 되는 악순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초기 정치개혁을 강조했었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방법이 폭력적인 정계개편을 전제로 하고, 그 귀결이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해소와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확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김대중 정권 또한 거센 국민적, 민중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정치개혁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형식적 절차는 부분적인 사안일 뿐이며 대표적인 반민주적 반인권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며⁴⁾ 이의 성공여부가 한 정치권력의 '민주성'을 시험하는 척도라고 본다. 김대중 정부 'NATO 정부

(NO Action Talking Only Government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정부)라고 하는 세간의 비아냥거림은 '국민과의 대화'나 '제2건국 선언' 등 DJ의 화려한 언술과 상징조작에 보내는 준엄한 비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의협(義俠)의 세계에서 진정한 민주정치의 세계로의 전환, 사상적 속박에서 사상적 자유로의 민주주의 확대 이것이 바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화두가 되어야 한다.

2) 사회적 협박기구로 전락한 노사정 위원회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노총은 김대중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고 민주노총은 선거이후 성명서를 내 김대중 정권에 대한 많은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사회적 협약기구>인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사정위 주창자의 '역사적 사건'⁵⁾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의 지난 1년은 노동계로서는 쓰디쓴 '배신의 시간'이었다. 노사정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은 출발에서부터 정부 - 재벌에게로 기울어져 있었다. '위기관리'를 임무로 하는 정권이 '위기'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선택한 대량정리해고와 임금의 상상을 초월한 감소는 반대로 노동계의 힘을 위축시키게 된다. 결국 노동계를 막바지에 몰아 놓은 상태에서 진행된 협약이 동등한 경쟁일리 없었다. 한편 노동계가 정리해고를 합의해주는 대가로 요구한 재벌에 대한 통제 강화와 경제위기 책임자, 부당 노동행위 처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계는 노사정위 참여의 내외적 명분을 잃게 되었고 노사정위는 사회적 협약기구가 아닌 <사회적 협박기구>가 되고 말았다. 2기 노사정위의 후반기가

4)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킨채 정치개혁을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념대결, 제대로된 정책대결의 정치란 국가보안법의 장벽 앞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둘째, 분단체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 반대세력을 제거할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은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 한국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아킬레스건이다.

5)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커다란 정치변화를 예고하는 대사건으로, 이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정치적·노사관계 수준에서의 노동의 배제를 거의 완전하게 종식하여 절차적 민주화를 거의 완결 짓게 된 것이다. 최장집, 1998

'개점휴업' 상태였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남은 일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사정위를 힘차게 박차고 나오는 일밖에는 선택의 수단이 없게 되었다.

3)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재벌 살리기

버티기가 심했던 LG - 현대간의 반도체 빅딜이 성공한다면 김대중 정권의 재벌개혁은 이제 일단락 되는 것이다. 그런데 빅딜은 재벌살리기인가? 재벌개혁인가? 한국 경제위기의 직접적 책임자인 재벌체제는 몇몇 제도적 보완장치와 빅딜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소유,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장치를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벌개혁과 빅딜을 '빅딜'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외환위기를 넘기기 위한 몇가지 조치들로 인해 일단 '위기 관리'에는 성공했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김대중 정권이 아니었더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문제였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재벌이 경제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다.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도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기업살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 초기 재벌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는 '재벌해체', '소유권 환수', '재산 몰수' 등 분명하면서도 급진적인 요구들이 존재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몰아닥친 대규모정리해고와 실업의 고통이 누구로 인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가 지나면서 정권초기에 감정의 용어리 상태로 있었던 재벌에 대한 요구들은 김대중 정권에 의해 낡은 의제로 치부되고 있다. 재벌개혁은 강력한 국가의 통제와 국민적 요구들이 수렴됨으로서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앞의 노사정위에서처럼 국민적 요구를 기각하고 재벌개혁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고 '재벌 살리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모든 일은 시와 때가 있는 것이다. 이미 강력해진 '경제권력'은 정권초기부터 자신의 책임은 망각한 채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이미 시기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지적과 결과에 대한 암울한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⁶⁾ 국민들이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

을 감내한 이유는 상해를 입힌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조건하에서였다. 국민들은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 김대중 정부 또한 조만간 심화된 실업과 재벌의 더욱 거세어지는 저항 속에서 김영삼 정권의 말기처럼 저항에 직면할지 모른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 그러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4) 김대중 정권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권력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잡은 자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신의 그림대로 세상을 움직여 보는 것이다. 아무도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최초로 권력을 잡기 위한 목표도 그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김대중 정권에게 99년은 선택의 순간이다. 그런데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선택의 순간일 뿐이다.

앞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정치개혁, 노동운동, 재벌개혁에 대한 이 정권의 태도 속에는 이 정권이 선택할 가까운 미래도 내포되어 있다. 김대중 정권이 선택한 보수화나 재벌개혁의 기각은 타의에 의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김대중의 개혁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잡아주어야 한다”던가 혹은 “김대중이 비(반)개혁세력에게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뚫어주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고도의 정치적 발언이다. 마치 87년

6) 불가사리처럼 돈을 먹어 치우는 이런 거대 부실기업은 5대재벌내에 우글우글하다. 5대재벌의 울타리 바깥에는 아무런 기업도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돈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 더 이상 흡수할 돈이 없을 때 이들도 비로소 처참하게 죽어갈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 많은 비관련 기업군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위기만 넘기면 나시 한국 경제희생의 첨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재벌이-편집자) 시대착오이다. 5% 성장경제에서 10% 성장경제의 신화인 '재기의 기적'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앞으로 5-6년간 세계의 시장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정태인,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재벌개혁만이 살길>, 1998.

과 92년 최선은 없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하자던가 최악을 선택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무덤을 파는 것이 낫다는 논리와 맥락이 닿아 있다. 다시 말해서 '개혁지지세력'이라고 자임하는 속에는 간택되고픈 속마음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의가 정치에 있을 리 만무하다.

비껴가지 않는 직설법으로 말하자면 '개혁'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세력이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지금의 집권당에 한 축을 담당하는 지지세력이 되기 위해서 그 결과 앞으로 국민회의를 해산하고 만들어질 새로운 정당에 합류하던가 아니면 POST DJ시대에 '한 야당' 하기 위한 선택에 붙이는 수사가 소위말해서 '개혁지지' 이데올로기이다. 과거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하던 세력과 김영삼으로의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며 갈등하던 두 세력이 '개혁지지'를 자임하며 후반기가 불안한 김대중 정권의 호위부대로 나서기 위해 깃발을 올렸다. 명분은 포위된 개혁을 구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정치적 행위는 적극적 선택의 결과이다. 단지 실패든 성공이든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중운동의 대의를 걸어 더럽히는 것은 일찍이 김영삼 집권초기에 감쪽소를 펼치며 권력의 품안에 안긴 그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4. 나오기 - 무엇을 할 것인가

어찌되었건 99년은 모든 정치적 선택이 종결되던가 아니면 막바지로 치닫는 한해가 될 것이다. 대신 민중운동세력으로서의 그야말로 DJ를 비롯한 반(비)민주세력에게 포위된 한 해가 될 것이다. 노동운동의 약화는 역으로 재벌집단의 발언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권의 내각제 연기와 재집권 전략은 다른 보수세력과의 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앞에서 말한 소위 재야의 마지막 어른들과, 어른들을 간판으로 삼은 졸병들이 민중운동을 떠나버린 99년. 민중운동은 고독을 각오하고 한해를 넘어서야만 한다.

이제 운동권이라면 사고방식의 적극적 변환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중운동권은 DJ에 대한 한 가닥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소위 '개혁'이라는 치장물의 딸랑거림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동운동 전선운동 방금 태동한 정당운동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 빈자리를 '참여연대' 같은 정책 대안적 시민운동이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99년은 정치권력의 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지배권력의 분열이 불러일으킬 동요의 공간에 노동자 민중의 정치가 자리잡아야 한다. 그리고 도래하는 천년을 계급정치의 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당 강령의 1번과 2번⁷⁾은 노동의 권리와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것이다. 정권이 바뀔수록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속자는 늘어만 가는 현실, 실업을 방지하거나 실직을 당한 사람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 우리는 올 한해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에 두고 김대중정권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다. 우리 능력이 닿는 대로 나머지 문제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갈 길이 바쁜 한해 해야 할 일도 많은 한해이다.

7)

1. 노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2.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에 따른 결사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박종철

보론 1

1. 국가보안법 50년의 역사

일제 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였던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과 사상범예방 구금령 등을 모델로 한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의 이식, 사회주의지에 대한 탄압의 필요성, 반공 이데올로기의 유지 등의 목적으로 형법이 제정되기 전인 1948년 12월 1일 만들어졌다. 물론 이 법을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일제하에서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변신한 이승만 정권 하의 친미 반공 정권이었다. 모든 '진보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58년에는 진보당 당수인 조봉암이 사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4.19 이후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자제되었으나 4차 개정을 통해 '불고지죄'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박정희 정권은 반공법을 제정하고 현 안기부의 모태인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정치적 반대 세

서울대 4학년 최영준

반세기 인권유린의 역사,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력에 대한 시찰과 규제를 하였다. 당시에는 전체 형사 사건보다 국가보안법의 사형·무기 선고율이 300배 이상 높았으며 장기간 수사와 고문 수사에 의한 무리한 기소와 조작 기소도 많았다. 74년에는 인혁당 사건이 발행하여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바로 다음 날 집행을 당하는 등, 국가보안법 운용에 잔혹함을 보여 주었다.

80년대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향상적 양산으로 가히 '국가보안법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 이후 이른바 '공안 정국'이 전개되면서 안기부 등은 공안전력자 53,116명에 대해 좌경조작가담활동 재개 여부를 추적하고 국내 좌경세력은 10,5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1991년 날치기 국회에서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93년을 제외하고 양심수는 꾸준히 증가되

오늘을 묻는 열사에게 어제를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어 왔으며 96년과 97년의 양심수의 수는 노태우 정권 시절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수도 계속 늘었다. 특히 97년에는 한해동안 1,376명이 양심수로 구속되었으며(하루 평균 3.8명) 이는 노태우 정권 집권 후반기 91년도에 구속자(1,356명, 하루 평균 3.7명)와 92년도에 구속자(1,145명, 하루 평균 3.13명)보다 많은 숫자이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문민정부에서 더욱 악용되었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98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은 전체 양심수 비율을 볼 때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았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률은 역대 정권이 40~50%였던 점에 비해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인 98년에는 60%를 훨씬 능가했다. 이것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인가?

(1) 모호함의 대명사, 국가보안법 7조

양심수가 가장 손쉽게 양산되어 온 근거에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가 있었다.

<제7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보법 7조는 한 마디로 모호해서 언제든지 공안 당국이 입맛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사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국보법 7조는 이미 사법부에서도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남용 및 위헌의 소지에 대해 지적해 온 바 있다. 95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국보법 7조 1,3,5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해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91년 국보법 개정 이래 최초로 국보법 7조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95년 4월 서울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우근 판사, 북한소설 출판 사건) 95년 5월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영기 판사, PC통신 공산당선언 게재 사건) 96년 1월 부산지법 형사1단독(정희상 판사, 북한대학생과 팩스서신교환사건) 96년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박충렬 씨 사건) 등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

박종철열사와 오늘의 한국사회

요지는 “국보법 7조가 국민의 사상의 다양성을 사전에 봉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고 무죄판결 이유는 “국보법 7조가 넓게 해석 적용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여전히 국보법의 인권유린 여부에 눈을 감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95년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제1항에서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고 따라서 제3항, 제5항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보법 7조 1,3,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보법 7조의 남용 및 인권침해 여부는 공안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 적용을 최소화하겠다”(98년 6월 이종찬 안기부장)

“국가보안법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98년 7월 박상천 법무부장관)

“절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않겠다”(98년 5월 김대중 대통령)

국보법 7조의 구속자 대부분이 구속 서너달 뒤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석방되어온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혐의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법이 존재함으로써 구속과 석방이 계속되는 것이다.

(2)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

최근의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위협이나 국가의 안보와는 전혀 거리가 멀게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과 진보 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98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들은 국제사회주의자 20명,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9명, 진보민중청년단체연합 6명, 전국학생연대 4명, 항공대 학생연대 4명, 영남위원회 15명, 북부노동자회 8명, 인제대 자주대오 11명, 울산대 자주대오 5명 등으로 진보 운동 세력 들임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은 반국가단체 규정을 받았고 구속자 대부분이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대중 정권의 향후 공안 정국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 일부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체제 내로 포용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이적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지배 질서를 합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이 정권에 가장 유용한 것은 이 부분일 것이다.

(3) 사상의 자유 및 인권 침해

국가보안법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세계인권선언은 18조에서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9조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0조 1항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오늘을 묻는 열사에게 어제를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 세계 인권 단체들이 계속 철폐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일반 형사사범의 처리절차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으로 인식되게 하는 가혹한 밀실수사, 고문, 장기구금과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 규정으로 국민들의 잠재의식에 반공이데올로기를 각인시켰다. 얼마 전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도 구속자들은 가혹한 수사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 호소할 바 있으며 공판에서도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4) 햇볕정책과의 모순

국가보안법이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똑같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이라도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98년 김대중 정권이 햇볕 정책을 표방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고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남한 자본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보안법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헌법 자체도 모순적이다. 헌법 전문과 제4조, 제66조 3항 등에서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면서 헌법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내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된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개의 실체가 공존함을 시인하고 있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관계에 의해서 존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지난 12월 법무부 관계자가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거론한 것은 햇볕정책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그 외에도 국가보안법은 헌법과의 모순, 형법과의 중복, 죄형법정주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침해사범은 이미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대체 입법된다면 여전히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은 자행될 수 있는 것이다.

3.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의 역사

박종철열사와 오늘의 한국사회

"공을 산 위로 굴러도 굴러도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수십 년 동안 민족민주운동의 고된 과제였다"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진보 진영의 가장 오래된 과제이자 가장 고된 주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었다.

5공 말부터 6공기간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졌던 국가보안법 존립근거에 대한 회의는 1991년 남북합의서가 채택되면서 거의 절정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절박하게 느꼈으나 1992년 대통령 선거전의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을 거치면서 냉각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은 1994년의 '마녀 사냥'을 거치는 총체적 보수화의 흐름 속에서 거의 돌이킬 수 없이 퇴조해 버렸다. 96년의 '한총련 사태'는 이 경향에 박차를 가했다.

1992년 이후의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①상설적 연대기구 운동 ②민가협 활동 및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 ③민변 변호사들의 소송활동으로 이루어져 왔다. 상설적 연대기구 운동은 조직 침탈 이후 수없이 만들어졌던 공대위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미미하였다. 한편 민가협의 활동은 200회 이상의 목요집회가 열리고 참신한 운동 방식이 많이 도입되었지만 양심수 문제의 그늘에 가리워 국가보안법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였다. 95년 11월 열린 '국가안보를 넘어 인간안보로'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움은 국내에서 열린 최대의 국제인권회의였고 국가보안법의 국제전략을 모색한 소중한 기회였음에도 이후 후속사업의 부진과 실천단위의 부재로 그 성과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민변 변호사들의 소송활동은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사법기관의 근본적인 보수성으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현재적 상황에서 드러난다.

첫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公安 세력은 약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검찰 公安부는 96년의 한총련 연세대 사태를 지휘하면서 公安세력의 중심부를 장악했으며 곧 이어 발족한 한총련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와 97년 4월 확대개편된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를 주도하였다. 이런 검찰 公安부는 과거의 公安세력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수동성을 벗어나 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기회과 추진에 의해 公安사건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셋째, 제도정치세력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대체입법하자는 의견조차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기존의 당론이었던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대선 DJP연합 추진 과정에서 포기했다. 넷째,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80년대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한계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연구 3』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폐지 운동의 광범한 연대와 구심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전략이 민족민주운동세력 내부에서 통일되지 못했다. 셋째,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과학적 전문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넷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대열에 일반 국민을 끌어들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끌어들이는 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

서준식 씨는 90년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 대해 위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더해 서준식 씨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고 탄압 국면에 대응하는 의미에서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대중적 지지보다도 오히려 고립을 초래한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4. 국가보안법 철폐의 방향

역사적 고찰 속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조직 침탈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통일의 논리에 종속되는 과거와 달리 방향 전환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준식 씨는 “통일 운동과 더불어 융성했다가 탄압받는 통일운동과 더불어 고립되어 갔다”, “통일 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이제 막연히 혼재되어서는 안 되며 국보철폐 운동은 자체의 독립된 전문성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상의 자유라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해야 한다. 지난 12월에는 세계 인권 선언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었고 96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인권의 개념은 서구에서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 처음 정립된 것이다. 근대시민헌법은 부르주아의 지배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역할을 했으며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1871년 파리 고문 등 계급투쟁이 전개되자 지배 질서 내로 이들을 포용하고 자신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사회권이 어느 정도 명시된 현대시민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인권은 두 개의 칼날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임을 자처하면서 노동자 민중에게 가해지는 착취를 은폐하려는 것에서 보이듯이 인권은 지배 질서의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한편 그러한 모순이 드러나게 될 때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정당화되어 지배 계급에게 되돌아오는 칼날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인권은 최상의 무기인 것이다.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내성에 들어 있는 세계관·인생관·정신적 신조의 자유라 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 ①국가는 사상을 이유로 시민을 처벌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 ②국가는 특정인의 사상을 탐지하는 탐색기관을 가질 수 없다.
- ③국가는 사상적 이유로 사회적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④국가는 시민에게 자신의 사상에 대하여 고백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라 한다면 사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람으로써 최소한의 위엄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질서인데 우리 나라에선 그러한 질서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다. '주의자'라든가 '사상범'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상 양심의 자유가 무시당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막고 있는 사상들이 두려우면 이에 대한 탄압을 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사상의 자유에 대해 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19조 의사 표현의 자유를 통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자유권이라 부르는 1세대 개념과 사회권이라 부르는 2세대 개념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자유권은 이미 보장되어 있으며 사회권 및 그 외의 새로운 인권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남한은 아직 자유권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부끄러운 인권 후진국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는 보수 정치만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58년 진보당의 조봉암, 61년 중앙사회당의 최백근, 67년 통일혁명당의 김종태 등 3인, 74년 인민혁명당 재건 사건의 이수병 등 7인, 80년 남민전 사건의 신항식 등 정치수에 대한 사형 집행은 남한에서의 진보 운동을 움츠리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얼마 전 민주노총 후보로 당선된 울산 동구청장이 국가보안법 사

건으로 구속되어 8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11월 29일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국가보안법 위반	1,968명	1,600명	1,484명	1,946명
양심수 계	11,384명	4,816명	3,431명	4,237명

창당을 한 청년진보당이나 올해 창당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 등 남한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진보 정당 운동도 정권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다면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으로 국가보안법은 곧 운명을 다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북한 시정에 눈을 돌리는 남한 자본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남한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사상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여 진보 진영의 정치세력화를 도와주고 인권의 침해를 막으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

오늘을 묻는 열사에게 어제를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 올해 초 한총련 의장을 결의하자마자 별때처럼 쳐들어간 공권력에 의해 고대 총학생회장이 구속된 것은 올해 공안 정국의 향배를 암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보안법이 저들의 필요에 의해 철폐된다 하더라도 대체법이나 관련 형법이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계급 역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12월 국가보안법은 제정 50년을 맞았다. 지난 50년간 이 땅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잃어버렸던 왼쪽의 자유, 노동자 민중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침해받지 않고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이,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는 반드시 "쟁취"해야 할 것이다.



보론 2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와 청년실업 대책수립을 위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

1. 99년 졸업자 - 갈 곳이 없다!

99년 1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제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했노라고 선언했다. 지난해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산업생산이 늘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는 이러한 대통령의 당당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도 당당한 대통령의 얼굴에 겹쳐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한숨짓는 아버지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취업의 가능성을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대학인의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150여만 명에 달했던 실업자수가 빠르면 올 1/4분기 중으로 20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이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의 주요 원인은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곳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이다. 노동부는 올해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39만5천 여명 가운데 18만2천 여명만 입대하거나 취업에 성공하고 21만3천 여명

이제 청년실업 운동으로 연/대/한/다!!

의 신규실업자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했다. 간단한 수치로만 봐서도 대졸 미취업율이 50%가 훨씬 넘는다. 심지어 18만 2천명이라는 숫자도 군 입대자를 포함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 취업율은 20~30%에 불과하다. 이미 40만이 넘는다는 대졸 실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30여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기세하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충격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연령계층은 20~29세라는 보고가 있다.¹⁾ 이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더불어 기존 노동자의 이직(移職)이 감소한 결과, 이 연령계층의 신규 학졸자에 대한 대체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절정을 이룬 실업률은 3~4년간 지속되고 이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취업자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1)한국노동연구원 「99년도 실업대책 방향」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실업의 문제는 시작일 뿐이다.

2. 졸업 후 2~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노동시장의 충격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연령계층은 20-29세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더불어 기존 노동자들의 이직이 감소한 결과, 이 연령 계층의 신규졸업자에 대한 대체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에게 실업은 당장 일자리 없음으로 인한 걱정과 함께 더욱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다. 각 기업에서는 신규채용을 함에 있어서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업의 나날을 보내다 보면 취업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규채용시 나이제한의 문제가 98년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각 기업에 대해 권고사항으로만 내려갔을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나이제한이 존재하고 있어, 청년실업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마치 18c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일할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던 노동자들을 부랑자로 낙인찍고 결국에는 사형에 처했듯이 대학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청년실업자들에게는 '나이제한' 제도에 걸려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평생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것을 포기하라는 낙인이.

2. 청년실업의 문제는 미취업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력의 하향평준화

이러한 대량 실업의 상황 속에서 '취업이 되면 마냥 부러워할 수 있는가?' 사실상 경제위기 이후 중졸이하의 취업이 급감한 것에 비하면 대졸이상의 취업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한데, 그 이유는 고졸이 중졸의 일자리로, 그리고 대졸 이상이 고졸의 일자리로 하향취업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98년 9급 공무원 공채합격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대졸이상이 72.1%(대학원 졸 0.4% 포함), 대학 재학이 17.6%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 89.7%를 차지했다. 합격자의 학력과 나이가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고학력화→고학력자의 하향취업→저학력자의 일자리 구축→고학력화 촉진'이라는 학력 낭비의 악순환 속에 빠져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의 급증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난 후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

야 한다는 미명하에 정리해고제와 피견 근로제를 법제화하고 각 기업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예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정리해고 되고, 이 빈자리를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가 메우고 있다. 각 기업이 모델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79~95년 구조조정으로 없어진 일자리가 약 4300만개에 달하며 없어진 정규직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제 노동자로 대체되었다.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전 산업 평균 20%,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는 서비스업은 30%에 이른다. 이들의 80%이상은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일하는 경우다. 대학을 졸업한 후 실업의 상태에 빠지게 된 청년실업자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이러한 임시직, 시간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같은 시간을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적고 의료보험, 연금, 병가 및 유급휴가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적으로 파트타임 임시직 노동자는 똑같은 일을 하는 풀타임 노동자에 비하여 20%에서 40%를 적게 번다. 또한 이들에게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심각하게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후 장기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 산업의 평균 노동시간이 81년 39.5시간에서 95년 40.9시간으로 늘었는데,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제 노동자로의 대체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언제 있을 지 모를 해고에 대비해 실질소득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대중 정부가 자신하는 바대로 경제위기가 이른 시간 안에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추구될 경우 취업자들에게 심각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문제는 평생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문제있는 대안 - 인턴사원제

정부는 신규실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라는 명분으로 98년 5월 '대학·전문대졸 인턴사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인턴사원을 모집하는 기업에게 1인당 45만 5천 원까지의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각 기업에 인턴사원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전남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는 모교출신의 미취업자들을 인턴사원으로 선발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임금의 50%이상을 기업측에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대안으로 인턴사원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작년 12월에 삼성그룹은 1,000명의 인턴사원을 공채로 모집하였고, 이 곳에 40,000여명이 몰려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인턴사원제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인턴사원제는 과거 기업에서 대학 졸업예정자들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교육(OJT)이라는 형식으로 대학재학생을 중심으로 우선 선발하던 제도가 바로 인턴사원제였다. 따라서 그 기간도 3개월 여 정도였고, 이후 선택권은 대부분 인턴사원에게 있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인턴사원제는 그 위상에서부터 전혀 다른 방

식으로 변모하였다. 정부도 인턴사원제도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인턴사원을 모집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사원으로의 채용여부는 기업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대규모의 실업상황에서 선택권을 박탈당한 인턴사원들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제기할 뿐이다. 만약 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정규사원으로 발령받지 못했을 경우는 인턴사원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해고당할 수밖에 없다.

인턴사원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이 제도로 인해 정규직 노동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작년 인천 지하철공사의 경우 정규직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세가 인턴사원제로 가는데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수한 인력을 골라내기 위해 이 제도를 택했다.'고 밝히며 정규직 채용계획을 인턴사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삼성그룹 인턴사원 모집의 경우 인턴사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2년에 이르고, 98년 인턴사원을 모집한 대부분의 기업이 인턴사원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인턴사원 기간을 장기화하는 모습은 신규채용을 인턴사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턴사원제의 세번째 문제는 인턴기간의 근무형태가 '현업에 있는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인턴사원제도 시행안이 발표된 후 일부 제약회사들이 3~6개월 OJT 영업사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몇 주의 교육 후 준(準)영업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인턴사원들은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이라는 미명하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²⁾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턴사원제는 신규채용을 창출한다는 미명하에 대졸미취업자들에게서 오히려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도 적용될 수 없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면서 재고용도 보장되지 않는 인턴사원제는 청년실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4. 이제 청년실업운동으로 연대한다!

올해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온 대안이란 위에서 말한 인턴사원제를 기업에게 적극 권장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올 한해에만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에 50만 명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단기적으로 실업율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고용보험 외에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전무하고 초고금리 사회인 한국에서 실업자가 되는 것은 사회적 파산자가 됨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대학사회에서의 경쟁이 강화될 뿐 아니라 졸업 이후의 미래가 극도로 불안하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학인들에게는 단지 두 가지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절망에 순종하는 개인의 삶으로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에 맞서 집단적 행동으로 싸워야만 할 것인가'

2. 인턴사원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50%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다

대선이 끝날 때만 약간씩 들춰지는 정치권들의 비리재산, 수십 조원에 이르는 재벌들의 해외 은닉재산,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는 군사비, 그리고 당장 실업의 고통속에 빠져 들어야만 하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민중들, 왜 정부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공권력으로 진압하면서, 신규채용을 거부하는 재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바꾸어야만 하는 현실이다.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이 곧 죽음이 모든 민중들에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 사회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비추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움직였던 대학을 이야기하자. 이제 대학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청년실업자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일할 권리'를 위해, 생존의 권리마저 잃어버린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 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5. 실업투쟁의 무기를 마련하자. 고용안정특별법!

대학인들은 청년실업이라는 문제가, 여성은 여성실업이라는 문제가, 노동자는 정리해고의 문제가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고용안정과 실업문제 해결은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너무도 절박한 이 문제는 실업에 대한 면역기능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때문에 문제의 허결은 어느 한 집단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사회 각 계각층의 집단화된 힘이 모아질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집중화된 하나의 총체적 요구를 통해 전사회적인 연대를 이루고 실업문제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총체적이고 가장 압축적인 대안은 바로 「고용안정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다. 고용시간 단축도 정리해고제 철폐도,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 지급도, 그 하나만으로는 지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모든 주장을 통합하여 '특별법'이라는 하나의 요구안으로 만들어내고 전 사회적으로 투쟁을 조직해나갈 때 현실의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다면 투쟁의 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실업투쟁의 무기를 마련하자.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의 권리를 위하여,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실업으로 고통받는 모든 민중과 함께 해야 할 실업투쟁을 위해 이제 고용안정특별법을 주장하자. 그리고 이 투쟁의 중심에 바로 우리 청년학생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들

I, 고용안정과 일할 권리 보장

오늘을 묻는 열사에게 어제를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1.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고용 창출
 -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고용을 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나 임금보조금 지급
 - 잔업수당 인상 및 잔업시간 축소
2.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철폐
 - 인턴사원제 폐지와 현장 교육시 노동권 보장
 - 신규 채용시 정리해고자 우선고용 의무화
 -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설립 전면 허용

II. 실업대책 수립

3. 실직자 및 저소득 국민을 위한 기초생활권 보장
4.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일원화
5. 장애인 및 여성 의무고용 확대
6. 취업연령의 상한 제한 철폐

III. 재원 마련

7. 재벌재산, 비리정치인 재산 사회 환수로 실업기금을 확충
8. 누진세 확대, 불로소득에 대한 고용세를 신설
9. 평화군축을 통한 일반회계예산 재원을 확보하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 명단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사료
	B12-2	47

1. 경찰(대공과, 보안수사대) 관련

▣ 고정희(29세) 88.5.13

연세대생으로 민족통일애국청년단 중앙본부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다 서초서 대공과에 연행 당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뒤 강남 성모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김성수((19세) 86.6.21

서울대 학생으로 총학생회 연극부에서 활동하다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 뒤 부산 송도 앞바다에 서 시멘트 덩어리에 매달려 있는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문영수(30세) 82.8.19

진야교통 노동자로 광주 서부서로 연행되어 경찰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뒤 행려병자로 위장되어 사체는 전남대 의대에서 해부 실습용으로 이용 되었다.

▣ 문승필 92.11.3

전남대 학생으로 미문화원 시위로 구속되었다 석방된 뒤 92년 대선을 앞두고 경찰의 수배를 받던 중 철로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신호수(24세) 86.6.19

방위병 시절에 북한 뼈라를 수집한 것을 그냥 둔채 제대하여 인천의 도화가스에 근무하던 중 서울 서부서 형사들에게 연행된 뒤 행방불명 되었다가 고향 근처인 여천 대미산 동굴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우종원(28세) 86.10.11

85년 서울대 운동권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그는 민주위 관련으로 수배를 받아오다 경부선 철로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이철규(25세) 89.5.10

조선대생으로 조선대 교지인 '민주조선'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명수배된 뒤 광주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이태춘(28세) 87.6.24

태광고무 노동자로 18일 부산 좌천동 시위때 온몸에 최루 가스를 뒤집어 쓴 채 육교밑에서 발견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 정법영 78.7.8

청주신학대생으로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신홍제분, 조광피혁 노동자들과 함께 목숨을 건 4개월간의 단식투쟁으로 경찰의 집중표적이 된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2. 기업주 등 관련

▣ 김용갑 90.3.28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원자주화 투쟁을 전개하던 중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학교측으로부터 공공연한 협박과 집단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위장한 타살로 추정된다.

■ 문용섭 88.6.9

광무택시 노동자로 족벌체제로 운영되던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휴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회사근처의 포장마차에서 회사간부와 깡패들과의 말다툼 끝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배중손 88.11.14

87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회사측의 휴업조치이후 어용 노조의 민주화와 임금인상 투쟁에서 앞장서 싸워오던 중 회사측의 문책과 감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오범근 88.3.10

프레스공으로 작업중 네 손가락이 잘려 수위로 근무하던 중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에 적극적으로 지지표명을 해왔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불려간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이덕인(29세) 95.11.28

4급 장애인으로 아암도 바닷가에서 노점을 하던 중 인천시에서 경찰병력과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강제철거하자 골리앗에 올라가 저항하다 실종된 뒤 아암도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이재호(25세) 89.10.29

인천 협신사 노동자로 회사측의 갖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 재건과 관련하여 주안 노동사목에서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둔기에 툄를 맞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정경식(29세) 87.6.8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로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던 중 노조지부장 선거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3. 군(보안사, 기무사)관련

■ 김두황(24세) 83.6.18

고대 학생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 성북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강제징집된 뒤 보안대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김영환(27세) 91.4.27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 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한미군사관계, 평화, 군축문제,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을 연구하던 그는 보안사의 추적을 받다 강경대 학생이 운명한 다음날 자취방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김용권(24세) 87.2.20

서울대생으로 카투사에 입대 후 보안부대로 호출된 뒤 프락치 행위를 강요받고 구타당한 뒤부터 정신불안에 시달려 병원치료를 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남현진(22세) 91.2.3

한국외국어대생으로 학생회 간부로 활동 중 군 입대. 상관의 "통일이 되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미제국주의다."라는 대답을 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노철승(23세) 87.3.1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수도방위사에 근무하다 당시 복역중이던 형과 편지를 주고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박상구(21세) 87.5.11

군복무 중 평소 상관의 미움을 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박성은(22세) 90.5.24

방위병으로 근무 중 부대 내에서 발생한 구타사건과 군부대 내의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한 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대 내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박종근(26세) 88.8.1

동국대 경주분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근무 중 녹용이 든 보약을 상납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박필호(22세) 87.3.19

부산대 의대생으로 육군에 입대 후 화장실에서 목이 매인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송종호(24세) 91.2.20

서울대생으로 학생회에서 활동하다 군에 입대한 뒤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이동상황실 안에서 벽면 합판에 목이 매인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우인수 88.6.24

성균관대생으로 군에 입대하여 포병연대에 근무 중 외박을 끝내고 귀대한 직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이승삼(22세) 87.3.3

부산대생으로 36사단에 입대 후 가족과 면회하고 나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부대에서 고참들의 심한 구타로 실신까지 하게 되자 구타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사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윤성(20세) 83.4.30

성균관대생으로 인문과학 연구회 회장직을 맡기도 한 그는 가두시위에서 연행된 뒤 강제징집되어 당시 군 강제징집자에 대한 보안대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 이이동(22세) 87.6.15

전남대 학생으로 입대 후 6월항쟁이 진행되던 당시 충정교육을 받을 때 그가 광주 항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심한구타를 당해 실신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임기윤(59세) 80.7.26

75년 결성된 '사회정의구현 부산 기독교회'의 회장을 지냈던 그는 국군 보안사령부 부산분실(속칭 삼일공사)에 연행되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정성희(21세) 82.7.23

연세대 학생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시위 과정에서 연행되어 강제징집된 뒤 철책초소 야간 근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 정연관(22세) 87.12.4

군입대후 대통령선거 군부재자 투표를 한 뒤 야당을 찍었다는 이유로 집단구타 당하여 운명하였다.

■ 최은순 83.8.14

동국대생으로 시위에비음모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뒤 강제징집되어 보안대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 최우혁(22세) 87.9.8

서울대 학생으로 학생운동에 헌신하여 수차례의 구류를 살기도 했던 그는 군복무 중 사회과학서적을 읽다 보안대에 적발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한영현(22세) 83.7.2

한양대 학생으로 부친의 야학활동을 한 선배의 조사과정 중 그의 이름이 나와 조사를 받고 강제징집된 직후 보안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한희철(23세) 83.12.11

군입대 후 시위주동자로 수배중인 친구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 주었는데 이후 편지가 들통나고 보안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 허원근(23세) 83.4.2

부산수산대생으로 군 복무 중 유류고 뒤에서 세 발의 총을 맞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다음 날이 첫 휴가였으며 한꺼번에 세발을 쏘아 자살을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타살임이 확실하다.

4. 안기부, 중앙정보부 관련

✓ ▣ 박창수(34세) 91.5.6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대우조선의 파업관계로 긴급소집된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 참석했다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안기부로부터 전노협 탈퇴를 강요받던 중 안양병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 ▣ 이내창(28세) 89.8.15

중앙대 안성교정 총학생회장으로 활동 중 8.15민족해방일 기념식을 앞둔 8월 14일 오전에 학교로 찾아온 안기부 인천분실 직원 도연주 등과 나간 뒤 남해안 절해고도 거문도 앞 바다에서 15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장준하(58세) 75.8.17

오랜 민주화투쟁과 통일운동으로 재야 대통령이라는 칭송까지 들은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는 유신헌법 철폐를 목적으로한 개헌운동을 벌이다가 포천의 약사봉 밑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최종길(42세) 73.10.19

서울대 법대 교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한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